



무지개동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 칙

본 무지개동산 (이하 본 요양원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요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본 요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입소자의 안전
- 노인학대 방지
-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 목적

- 설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 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 저장 · 편집 · 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무지개동산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무지개동산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① 무지개동산 CCTV는 총 20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0대	본관 및 별관 주출입구, 식당, 조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별관 및 본관 복도, 수급자 생활실, 본관 및 별관 엘리베이터

1. 시설 전체 생활실 설치 9대 (일반 생활실 8대, 특별침실 1대)
 2. 공용공간 3대 (본관 거실1대, 별관1층 및 별관2층 복도 각 1대)
 3. 외부공간 2대 (본관 주출입구 1대, 별관 주출입구 1대)
 4. 그 외 장소 6대 (물리치료실, 조리실, 식당, 프로그램실, 본관 엘리베이터, 별관 엘리베이터)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본관1층 주출입구 및 별관1층 주출입구에 설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6조 (관리책임자 지정) CCTV 설치 · 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 · 운영 관리책임자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 주 희	시설장	무지개동산 복지팀	-
운영(담당)자	한 성 현	사회복지사	무지개동산 복지팀	-
모니터링 (담당)자	한 성 현	사회복지사	무지개동산 복지팀	-
	곽 지 원			-
특정시간(야간) 입소자 안전확인위한 모니터링 (담당자)	야간전담 종사자	요양보호사 (권한: 야간시간대 수급자 안전을위한 모니터링만 허용됨 그 외 불가)	무지개동산 요양팀	-
	야간전담 종사자			-
	야간전담 종사자			-
	야간전담 종사자			-
설치업체	KT 올레 CCTV	고객센터	-	080-258-0007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3.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 조사 및 개선
5.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6. 영상정보 유출 및 오 ·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7. 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8. 영상정보 파일보호 및 관리 · 감독
9.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7조 (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무지개동산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 (130만 화소)
2. CCTV 촬영: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 (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8조 (수집 목적 · 의견 수렴)

- ① 법에 따라 노인학대 방지, 수급자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이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 의한 영상정보 수집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 ③ 제2항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등의 적절성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 ④ 수급자 및 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9조 (안내판의 설치)

정보주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본원 출입구(본관 및 별관 각 각)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제10조 (운영·관리)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운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관리방침을 작성하고 게시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4.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6.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7.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요양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관·파기)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 의해 수집한 영상정보는 법에 의해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의 보관, 파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관기준, 보관기간에 따른다.

제12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주 보호자는 요양원이 처리하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주 보호자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가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급박한 상황, 학대, 안전 조치미흡 등의 필요한 영상정보로 제한한다.

②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주 보호자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③ 무지개동산은 제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에 무지개동산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지개동산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지개동산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⑤ 무지개동산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13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무지개동산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 등)
5.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요양원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정보주체의 주 보호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요양원에서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을 따른다.

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보건복지부훈령)
3. 그 밖의 관계 법령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요청자는 상기 관리책임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열람 등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가족 (친가족에 한하며,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필수)
- 요청자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제17조 (화상정보 처리 제한 등에 관한사항)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제공, 파기를 요구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하며,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다음과 같은 사유에는 영상정보의 열람을 허용한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④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⑤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⑥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 ⑦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⑧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 위 사유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 열람이 불가

-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②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하는 행위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③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자는 저장되어있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18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으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9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8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 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 해야 한다.

제20조 (화상정보 설치에 따른 준수사항)

- 화상정보 설치·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③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제21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무지개동산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1.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 등)
5.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2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무지개동산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정보주체의 주 보호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 현황

제2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지개동산은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을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보건복지부훈령)
3. 그 밖의 관계 법령

[별지 제1호 서식] 제10조 (운영·관리) 제7항에 따름.

(운영 · 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요양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 관리계획 시행일자: 2023년 6월 22일

홈페이지 공고일자: 2023년 5월 29일 (무지개동산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에 게재)

- CCTV관련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무지개동산 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별지 제2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 (미운영)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 (미운영) 신고필증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

[별지 제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정정 · 삭제청구서

[별지 제9호 서식] 정정(삭제) 조치결과 통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 · 열람 · 제공)

[별지 제1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 · 파기 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 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CCTV 설치 안내 (예시)

[별지 제14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별지 제15호 서식]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동의서

-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 연락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p>–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p> <p>–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 . . 까지</p>		
	동의자 현황	<p>– 수급자 수: 명</p> <p>– 동의자 수: 명</p> <p>• 수급자 수: 명</p> <p>• 보호자 수: 명</p>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 받았기에 붙임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이름
성명
성명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필증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 -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 . . 까지		
	동의자 현황	- 수급자 수: 명 - 동의자 수: 명 • 수급자 수: 명 • 보호자 수: 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장기요양기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장소]

☒ 침실
 ☒ 공동거실(복도포함)
 ☒ 현관(본관/별관 출입구)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 엘리베이터
 ☒ 기타(조리실)

-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 보호자 대상]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종사자 대상]

성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서명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1-42110-00444
- 동의 기간: 2024.06.05. ~ 2024.12.31. 까지
- 보호자(종사자) 연락처:

무지개동산 대표자 귀하

[별지 제 6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예: 연도, 월, 일, 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무지개동산 대표자 귀하</p>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제한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 오후)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무지개동산 대표자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 적 사 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 일 명 칭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p>「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무지개동산 대표자 귀하</p>				

[별지 제 9호 서식]

번 호	정 정 (삭 제)조 치 결 과 통 지 서			
제 호				
① 수 신	_____ 귀하 (주소 : _____)			
② 개 인 정 보 파 일 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 정 (삭 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p>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무지개동산 대표자</p>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 · 열람 · 제공)

번호	구분	이용일자	요청자 (성명, 연락처)	파일명/형태 /내용	이용목적 / 사유	이용시간	이용장소	담당자		비고
								성명	서명	
1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 이용 ☐ 제공 ☐ 열람									

작성요령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 열람: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시:**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 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 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번호	점검일 자	성능 및 촬영기간 삭제주기	안내판 설치 장소	영상정보저장장 치		모니터 관리		담당자 명		조치사항 등
				정상 작동여 부	잠금장 치	화면 외부 유출 유·무	잠금장 치	성명	서명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C C T V 설 치 안 내 (예시)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책 임 자	책임자 : _____ 대표자[시설장] [연락처] 02- 운영자 : _____ 사무국장 [연락처] 위탁업체 : 해당 없음 [연락처]

210mm

297mm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무지개동산 대표자 귀하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본인 이외의 다른 수급자나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 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무지개동산 대표자 귀하

